일반직원정년에관한규칙

1998.05.01.제정 2011.04.18.일부개정 2012.11.01.일부개정

<총무팀>

제 1 조 (목적) 본 규칙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81조의 2에 의거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본 규칙에서 일반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별표 1, 별표 2에 해당하는 모든 일반직원을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 본 규칙의 적용범위는 법인 및 산하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일반직원에 적용된다.

제 4 조 (정년) ①일반직원(일반직,기술직)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다만, 기능직의 방호직렬은 59세, 기타 직렬은 57세로 한다. (개정 2012.11.1.)

②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제 5 조 (명예퇴직) 일반직원으로 본 학원에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조 (특별휴가)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할 일반직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 이내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, 2012.11.1.)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정년에 대한 경과조치) 본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원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 인자와 1998년 12월 31일 인자는 각 해당일자에, 1999년 6월 30일 인자는 1998년 12월 31일에, 1999년 12월 31일 인자는 1999년 3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.

③(일반직에 대한 경과조치) 본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 별표1 및 별표2(제90조 관련)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급에 임용된 자의 정년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